

##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4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0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1. 제안이유

-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, 동 수수료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
-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-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수수료 신설
  -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: 1건당 3,000원

### 3. 근거법령 : 별 첨

- 첨 부 : 1.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
2. 신구조문대비표

##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 제2호 사목중 세목(3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3) 공인증개사자격증 재교부 신청	1건	3,000
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개 정 안		
[별표 2] 제 증명 등 수수료율표 (단위: 원)			[별표 2] 제 증명 등 수수료율표 (단위: 원)		
	기준	요액	구 분	기준	요액
1. (생략) 가.~다.(생략) 2. 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, 시설확인 등 가~바 (생략) 사. 자격시험 관련 (1) ~ (2) (생략) <u>(신설)</u>			1. (현행과 같음) 가.~다.(현행과 같음) 2. .... ..... 가~바 (현행과 같음) 사. .... (1)~(2) (현행과 같음) <u>(3)공인중개사자격증                      재교부 신청</u>	1건	3,000

## 관계 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15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# □ 부동산중개업법

제8조 (공인중개사) ① ~ ③ (생략)

④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.

제37조의3 (수수료)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1~2 (생략)

3.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

4. (생략)

### □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

제9조 (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)① (생략)

②법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